

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6 ~ 74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06. 12. 7.
제출자	거창군수

1. 개정이유

- 고등학교 이하로 지원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현 조례의 지원범위를 대학까지, 또한 우수 교원과 학생에게도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범위를 확대하고
- 사업확대에 따른 교육경비의 기준액을 삭제하여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에 따른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거창군 관내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지원범위 확대(안 제1조).
 - 현행 초·중·고등학교 ⇒ 초·중·고등학교·대학까지 포함
- 교육보조사업 범위 확대(안 제2조제6호 신설).
 - “우수교원 및 우수 학생유치에 필요한 사업” 신설
- 당해연도 일반회계 지방세의 3%범위를 삭제(안 제3조).
- 보조사업의 신청(안 제4조).
 - 현행 초·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,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보조금을 신청 ⇒ 대학장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및 제7조
- 한국폴리텍Ⅶ 거창대학의 운영에 관한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협약체결

나. 예산조치 : '07년 예산반영

다. 기 타

-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과 같음
- 입법예고(2006. 11. 13 ~ 12. 3)결과 : 1건 (지원확대 유보, 기준액 삭제→5~10%변경)

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「시·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」”을 “「시·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」 및 「고등교육법 제7조」”로, “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(이하 “각급학교”라 한다)”를 “각급학교”로 한다.

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우수교원 및 우수 학생유치에 필요한 사업

제3조를 삭제한다.

제4조중 “고등학교장”을 “고등학교장과 대학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6항 및 「시·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」에 의하여 거창군 관내 <u>고등학교이하</u> <u>각급학교</u>(이하“<u>각급학교</u>”라 한다)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보조사업의 범위) <u>각급학교의</u>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(이하 “보조사업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5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 <p>6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</p> <p>제3조(보조기준액) <u>각급학교에</u>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당해연도 일반회계 지방세의 3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제4조(보조금의 신청) ① <u>각급학교의</u>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[별지 제1호서식]의 신청서를 초·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, <u>고등학교장은</u>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----- -----과 「<u>시·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</u>」 및 「<u>고등교육법 제7조</u>」----- <u>각급학교</u>----- -----.</p> <p>제2조(보조사업의 범위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(현행과 같음) 6. <u>우수교원 및 우수 학생유치에 필요한 사업</u> 7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 제></p> <p>제4조(보조금의 신청) ① ----- ----- -----, <u>고등학교장과 대학장은</u> ----- -----.</p>